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73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윤후덕·김두관·김윤덕

김정호 · 김철민 · 변재일

서삼석 • 이원욱 • 임종성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의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의 납부가 개시되어 지주회사 설립·전환하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이에 기존의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 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 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제1항·제2항, 부칙 제1조 단서·제19조·제4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각각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4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 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 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 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 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 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 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 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 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 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 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 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 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 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 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②
<u>2026년 12월 31일</u> -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 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 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 ⑧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 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 (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 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 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	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
	<u>.</u>
제	· 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
	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 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과서	베특	-례	케	관	한	적-	<u>용</u> i	爿)		
							2	02	4년		월
	<u>1일</u>	_									
제	443	<u> </u>	주식	의	현	물	출	사	등	에	의
	한	지	주회	사	의	설	립	등	-에	다	한
	과서	베특	-례	케	관	한	경	과:	조치	([<u>20</u>
	<u>23</u> ਵ	1	12월]	31 §]					
		·.									